

창원지방법원 2018. 12. 19 선고 2018가단10524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1. 주식회사 A

2. 부용산업개발 주식회사

3. B

피고1. C

2. D

변론 종결2018. 11. 21.

판결 선고2018. 12. 19.

주 문

1.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. 4.

21. 접수 제214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피고 D은 원고 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

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. 4. 21. 접수 제234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
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제1부동산'이라고 한다)은 원고 주식회사 A(이하 '원고 A'라고 한다)가 소유하고 있었는데, 피고 C 앞으로 2015. 4. 21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[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부용산업개발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, 피고 C은 2015. 4. 21. 위 가등기를 이전받은 후 이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]

나.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제2부동산'이라고 한다)은 원고 B(원고 A의 대표이사)이 소유하고 있었는데, 2015. 4. 21. 피고 D 앞으로 2015. 4. 20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1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들은, 원고들이 교환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교환계약의 당사자조차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,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의 유무로 판단할 사항이고 당사자적격의 유무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므로,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대한 판단

(1) 주위적으로,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피고들 소유의 진주시 E에 있는 F 일식집 등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바, 피고들은 위 일식집의 매출규모 등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 그 소유권도 이전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, 사기·착오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거나,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

구한다.

갑 3,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,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증거가 없으며, 오히려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들은 주식회사 신라에이에프와의 교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.

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(2) 예비적으로, 원고들은 G 또는 주식회사 신라에이에프씨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일식집 등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바, 위 교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, 위 일식집 매출규모 등에 관한 G 등의 사기·착오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거나, G 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그러나 갑 3,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, 원고들과 G 또는 주식회사 신라에이에프씨 사이에 제3자(피고들)를 위한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. 뿐만 아니라,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(이른바 기본관계)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(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10다31860,31877 판결 등 참고).

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판사강종선

별지